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08. 08. (금요일)

ICJ, 기후위기 책임 묻는다... 국제법 새 장 열리나

- 바누아투의 호소에 시작된 절차 -
- 국경 넘는 책임과 의무 -

2025년 7월 23일, 국제 사회는 기후정의 실현을 향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자문 절차를 시작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사진=ICJ)

유엔의 최고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의 기후변화 책임과 법적 의무’에 대한 자문 절차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ICJ는 “각 정부는 화석연료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방치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다른 나라들에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자문은 기후 변화로 국가 전체가 수몰 위기에 처한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총 130개국 이상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전례 없는 국제적 연대를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논의는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 건강권, 주거권 등 인권과도 밀접히 연결된 사안이라는 인식을 국제법적 차원에서 공론화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 소장 이와소와 유지는 “이 의무가 환경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 기후 시스템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각국은 자국의 법적 책임과 국제적 의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ICJ에 제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몇 달간 공개 심리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 의견서에는 ▲기후변화가 자국과 인류 전체에 미치는 실질적 피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협약의 해석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별화된 책임 ▲미래 세대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독일과 뉴질랜드 등은 “기후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 대응이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파리 협정상의 ‘CBDR(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을 법적 기준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J의 이번 권고가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전 세계 기후 소송은 물론 기후 정책 관련 국제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다.

담당 부서 제3회 HLMUN PRESS팀	팀장	총괄	안태현
	팀원	기사 작성 및 번역	맹민주, 김지민
한림대학교 총학생회 hallym39th_baekya@naver.com			
한림대학교 제3회 모의유엔협회 hallymmun@gmail.com			